

1. 개정이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22.4월 개통예정)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급여에 대하여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전국단위 신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7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나. 장제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8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다. 자산형성지원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32조의4)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

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생략)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u>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시장·군수·구청장 ----- -----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u>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u>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가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②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자 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생 략)	----- ----- ----- ----- -----. ③ (현행과 같음)
--	---